강릉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사전예약 방문제 운영 안내

- 강릉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 방문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내 당첨자(1인)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VII.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2.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사용, 일회용 장갑착용, 비접촉체온계, 견본주택 내 음료섭취 제한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사전예약방문 관람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3-653-8902)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3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강릉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강릉시 고시」제2021-219호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 9. 30. 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후 7일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기준,일정,방법,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6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필요(2순위)
세대주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신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 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주택수의 4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교동하늘채.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인지세법」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60%)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교동하늘채.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1.10.12(화)	2021.10.13.(수)	2021.10.14.(목)	2021.10.21.(목)	2021.10.22.(금)~ 2021.10.31.(일)	2021.11.01.(월)~ 2021.11.03.(수)
방 법	인터넷 청약(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방문접수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16:00)
장 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강릉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 견본주택 강릉시 교동 30번지**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10일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7.5.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강릉시 주택과-25576(2021.09.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산1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지상 25층 8개동 688세대

[특별공급 321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6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29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4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1000695	01	84.8280A	84A	84.8280	27.0009	111.8289	4.3634	49.1973	165.3896	45.0834	395	39	79	27	39	11	195	200	18
		02	84.8689B	84B	84.8689	27.2449	112.1138	4.3656	49.2210	165.7004	45.1681	148	14	29	10	14	4	71	77	7
		03	84.9668C	84C	84.9668	27.5438	112.5106	4.3706	49.2778	166.1590	45.2931	103	10	21	7	10	3	51	52	5
		04	114.0832	114	114.0832	35.8142	149.8974	5.8683	66.1643	221.9300	60.4957	37	-	-	-	3	1	4	33	2
		05	135.5082	135	135.5082	45.4205	180.9287	6.9704	78.5901	266.4892	72.6420	5	-	-	-	-	-	-	5	-
합 계												688	63	129	44	66	19	321	367	3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산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

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타입)	동별	층수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2022.3.20	2022.8.20	2023.1.20	2023.7.20	2023.12.20	2024.5.20	
84.8280A (84A)	101동 ~ 103동	1층	2	12,593,000	346,507,000	-	359,100,000	35,910,000	35,910,000	35,910,000	35,910,000	35,910,000	35,910,000	35,910,000	107,730,000
		2층	6	12,593,000	355,507,000	-	368,10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110,430,000
		3층	7	12,593,000	364,507,000	-	377,10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113,130,000
		4~14층	77	12,593,000	373,507,000	-	386,100,000	38,610,000	38,610,000	38,610,000	38,610,000	38,610,000	38,610,000	38,610,000	115,830,000
		15층~	69	12,593,000	382,507,000	-	395,10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118,530,000
	104동 ~ 108동	1층	1	12,593,000	351,507,000	-	364,10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109,230,000
		2층	9	12,593,000	360,507,000	-	373,10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111,930,000
		3층	10	12,593,000	369,507,000	-	382,10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114,630,000
		4~14층	121	12,593,000	378,507,000	-	391,10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117,330,000
		15층~	93	12,593,000	387,507,000	-	400,10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120,030,000
84.8689B (84B)	101동 ~ 103동	1층	1	12,625,000	345,875,000	-	358,50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107,550,000
		2층	3	12,625,000	354,875,000	-	367,50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110,250,000
		3층	3	12,625,000	363,875,000	-	376,50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112,950,000
		4~14층	33	12,625,000	372,875,000	-	385,50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115,650,000
		15층~	29	12,625,000	381,875,000	-	394,500,000	39,450,000	39,450,000	39,450,000	39,450,000	39,450,000	39,450,000	39,450,000	118,350,000
	104동 ~ 107동	1층	1	12,625,000	350,875,000	-	363,50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109,050,000
		2층	4	12,625,000	359,875,000	-	372,50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111,750,000
		3층	4	12,625,000	368,875,000	-	381,50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114,450,000
		4~14층	44	12,625,000	377,875,000	-	390,500,000	39,050,000	39,050,000	39,050,000	39,050,000	39,050,000	39,050,000	39,050,000	117,150,000
		15층~	26	12,625,000	386,875,000	-	399,50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119,850,000
84.9668C (84C)	101동 ~ 103동	2층	1	12,670,000	353,930,000	-	366,60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109,980,000
		3층	1	12,670,000	362,930,000	-	375,60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112,680,000
		4~14층	32	12,670,000	371,930,000	-	384,60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115,380,000

		15층~	27	12,670,000	380,930,000	-	393,600,000	39,360,000	39,360,000	39,360,000	39,360,000	39,360,000	39,360,000	39,360,000	118,080,000
	106동 ~ 107동	2층	2	12,670,000	358,930,000	-	371,60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3층	2	12,670,000	367,930,000	-	380,60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114,180,000
		4~14층	22	12,670,000	376,930,000	-	389,600,000	38,960,000	38,960,000	38,960,000	38,960,000	38,960,000	38,960,000	38,960,000	116,880,000
		15층~	16	12,670,000	385,930,000	-	398,60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119,580,000
114.0832 (114)	108동	2층	2	16,622,000	470,707,273	47,070,727	534,40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160,320,000
		3층	2	16,622,000	479,798,182	47,979,818	544,40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163,320,000
		4~14층	22	16,622,000	497,980,000	49,798,000	564,40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169,320,000
		15~20층	11	16,622,000	507,070,909	50,707,091	574,40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172,320,000
135.5082 (135)	해당동	20~25층	5	22,292,000	668,370,909	66,837,091	757,50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227,25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등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면적합산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신탁등기 말소비용, 금지사항 말소비용 등 포함), 통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 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 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114	135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3	2	-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8	2	2	-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	3	2	-	-	13
	중소기업 근로자	8	3	2	-	-	13
	장애인	8	3	2	-	-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79	29	21	-	-	129
생애최초 특별공급		27	10	7	-	-	4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9	14	10	3	-	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4	3	1	-	19
합 계		195	71	51	4	-	32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 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 이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ㆍ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table>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강릉시 및 강원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3세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table>
<tr><td></td><td>
<table>
<tr><th>구 분</th><th>해당기관</th><th>연락처</th></tr>
<tr><td>장애인(강원도)</td><td>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td><td>033-249-2674</td></tr>
<tr><td>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처)</td><td rowspan="2">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td><td rowspan="2">033-610-0636</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td></tr>
<tr><td>중소기업근로자</td><td>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부 강원영동사무소</td><td>033-655-4143</td></tr>
<tr><td>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td><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d>02-2225-6378</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6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또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강릉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미성년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녀 4명	35	
		미성년자녀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자녀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중 영유아 2명	10	
		자녀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해당지역(강원도)
		5년이상~10년미만	10	
		1년이상~5년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등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법령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29세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특별공급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 3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혼인신고 이전 출산 자녀(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포함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각각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강릉시 1년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120%초과~	7,236,193원~	8,513,047원~	8,513,047원~	8,872,377원~	9,333,629원~	9,794,880원~

	경우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1인당 평균소득(384,376) x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일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일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4세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 한다) 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세대 구성원중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혼 신청자 청약 신청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하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주택 우선공급(70%)	기준소득	130%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주택 일반공급(30%)	상위소득	130%초과~ 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산정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주택선설지역인 강릉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강릉시 1년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릉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1명	10	5명	30	

<table>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2명</td><td>15</td><td>6명</td><td>35</td><td rowspan="2">(1)만 18세이상~만30세미만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 30세이상 : 자녀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③입주자
저축가입
기간</td><td rowspan="10">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이상 ~ 9년미만</td><td>10</td><td rowspan="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계산 됨)</td></tr>
<tr><td>6개월이상 ~ 1년미만</td><td>2</td><td>9년이상 ~ 10년미만</td><td>11</td></tr>
<tr><td>1년이상 ~ 2년미만</td><td>3</td><td>10년이상 ~ 11년미만</td><td>12</td></tr>
<tr><td>2년이상 ~ 3년미만</td><td>4</td><td>11년이상 ~ 12년미만</td><td>13</td></tr>
<tr><td>3년이상 ~ 4년미만</td><td>5</td><td>12년이상 ~ 13년미만</td><td>14</td></tr>
<tr><td>4년이상 ~ 5년미만</td><td>6</td><td>13년이상 ~ 14년미만</td><td>15</td></tr>
<tr><td>5년이상 ~ 6년미만</td><td>7</td><td>14년이상 ~ 15년미만</td><td>16</td></tr>
<tr><td>6년이상 ~ 7년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이상 ~ 8년미만</td><td>9</td><td></td><td></td></tr>
<tr><td>총 점</td><td>84</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역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td></tr>
</table>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3조 [별표1]

구 분	신 청 자 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존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0.12(화) (청약Home 인터넷: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14:0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1.10.13(수) 08:00~17:3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09:00~16:00)
	2순위	2021.10.14(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전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등)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정 날인없이 신청인 [서명] 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 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10.21(목)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11.01.(월) ~ 2021.11.03.(수) (10:00 ~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명단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상기 장소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공동인증서 로그인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0.21(목) ~ 2021.10.30(토)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청약조회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0.2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유의사항	• 2018.0.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등)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 특별공급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등 확인)
- 상기 기간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 2021.10.22(금) ~ 2021.10.31(일) (10일간 10:00~16:00)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검수일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당첨자 검수일은 정당계약일 이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서류 제출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

▣ 공통(특별,일반) 사전제출서류 (예비당첨자 포함)

구분	서류전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특별/일반] (예비당첨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접수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세대원	해외 장기체류 여부 체크,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추가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사실여부 확인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2참조),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소득입증서류 ※ FAX수신 문서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접수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시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가점제) 사전제출 추가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저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소명서류	본인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표1>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	* 해당직장

	소득지급명세서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계약시 작성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계약시 작성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 실적으로 인정)]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 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시 : 2021.11.01(월)~2021.11.03(수) 3일간 (10:00~16:00)	※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관련 정부지침변경 및 지역감염자 등에 따라 계약체결기간이 변동 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자격검증 미제출자	○		자격검증서류(사전서류미제출자)	-	당첨 유형별 입주자대상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시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ㆍ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포함)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약자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추가사항(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인감도장		시 대리인 계약불가
	ㅇ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ㅇ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산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후「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378837-01-010815	한국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해당계좌는 상기 모계좌로 자동이체되어 관리가 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001호 홍길동: 1011001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과 동일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 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
-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자납시 무이자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등 제반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후 미입주등) 금융기관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맘스카페, 동아리실, 스터디룸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6m이상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입니다. (지하3층 등 일부는 2.7m이상임)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VIII.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금액

주택형별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타사항
		계약시	2022.03.20.	입주시	
84A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84B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84C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114	12,000,000	1,200,000	1,200,000	9,600,000	
135	13,000,000	1,300,000	1,300,000	10,400,000	

(금액: 원, VAT포함)

▣ 발코니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공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ㆍ허가 협의 완료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샷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	국민은행	378801-01-181440	한국자산신탁

- 발코니확장 공사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발코니확장비는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상기 입금계좌로 반드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ㆍ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 홍길동)
- 발코니 확장비를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등은 계약 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동시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주택형	적용부위	대수	계약가 (원,VAT포함)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 03. 20)	잔금80% (입주시)	제조사	비고
84A형	거실/주방+안방	2대	3,660,000	366,000	366,000	2,928,000	LG전자(주)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알파룸	5대	7,680,000	768,000	768,000	6,144,000		
84B형	거실/주방+안방	2대	3,810,000	381,000	381,000	3,048,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C형	거실/주방+안방	2대	3,660,000	366,000	366,000	2,928,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알파룸	5대	7,680,000	768,000	768,000	6,144,000		
114형	거실+주방+안방	3대	5,350,000	535,000	535,000	4,28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알파룸	6대	9,090,000	909,000	909,000	7.272,000		
135형	거실+주방+안방(2층)+침실1+ 침실2+가족실	6대	9,840,000	984,000	984,000	7,872,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품 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계약가(원)	비고
빌트인냉장고	전타입	LG전자	S711SI24B	5,790,000	710리터, 스테인레스
빌트인김치냉장고+키큰장		LG전자	K221PR14B	1,450,000	223리터, 키큰장포함
하이브리드쿡탑		LG전자	BEY3GTBI	1,090,000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LG전자	BEH3GTBI	980,000	인덕션1구+하이라이트2구
광파오븐		LG전자	MZ385EBT	470,000	기본형, 38리터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	1,100,000	12인용, 빌트인타입

- 가전제품과 관련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교동2공원개발(주)가 부담합니다.

● 마감재/가구

품 목	적용주택형	계약금액 (원, VAT포함)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3.20.)	잔금80% (입주시)	비고
조명변경,우물천정,간접등박스	84A	2,590,000	259,000	259,000	2,072,000	
	84B	2,740,000	274,000	274,000	2,192,000	
	84C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114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135	2,840,000	284,000	284,000	2,272,000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상판)	84A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84B	1,330,000	133,000	133,000	1,064,000	
	84C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114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135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3연동슬라이드 현관중문	전타입	1,290,000	129,000	129,000	1,032,000	
아트월마감연장	84C	860,000	86,000	86,000	688,000	
대화면월패드	전타입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욕실스마트환기팬	84A,84B,84C,114	800,000	80,000	80,000	640,000	
	135	1,310,000	131,000	131,000	1,048,000	
안방 붙박이장	84A	1,860,000	186,000	186,000	1,488,000	
	84C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114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거실,침실2통합 하이브리드월	84A	2,070,000	207,000	207,000	1,656,000	
시스템키큰장	전평형	440,000	44,000	44,000	352,000	

침실1,2통합 하이브리드월	84B	2,680,000	268,000	268,000	2,144,000	
	84C	2,670,000	267,000	267,000	2,136,000	
	114	2,740,000	274,000	274,000	2,192,000	
복도팬트리+알파룸	84C	2,410,000	241,000	241,000	1,928,000	
와이드다이닝+수납강화	84A	1,460,000	146,000	146,000	1,168,000	
발코니2하부수납장	전타입	650,000	65,000	65,000	520,000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국민은행	378801-01-181453	한국자산신탁	계약일	2022.03.20	입주지정일

-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통)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시 모형 및 분양유인물 등에 표현된 아파트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물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시어 제작 되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동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정,배면 및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과 동호수 사인의 위치 및 개소,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방,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과 포함되지 않은 전시품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

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등이 다를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등이 폭, 높이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및마감자재 수준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계약자용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정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외관 디자인은 상품개선,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시설물 및 제연시설물 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제습기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부대시설 등의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높이, 개소, 마감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외의 단지내 상가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선형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및 단지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각종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할관청,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강릉시 지역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등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A, 84C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전 세대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공용부분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합니다.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 됩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7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강릉시 고시 제2021-255호(2021.09.0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기준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조성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21년 6월 2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현황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세대는 단지 주변 공동주택으로 인해 일조와 조망 및 빛간섭, 사생활 침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릉시에는 공군 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훈련등으로 인한 항공 소음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인ㆍ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101동에 정화조 연도가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연도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는 악취,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승계조건)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학생 배치관련 초등학생은 교동초등학교, 중학생은 강릉시 중학교 학구내 배치 가능하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내 인접동 및 같은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디자인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출입구 계단의 단수, 장애자램프의 길이 및 높이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ㆍ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세대 전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옹벽은 실시공시 일부 조경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디자인,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ㆍ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ㆍ허가 과정, 법규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등의 위치, 구성, 마감재료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ㆍ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향,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ㆍ조망권ㆍ소음진동ㆍ악취발생ㆍ사생활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방,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출입구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일체의 민원제기 및 이동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 개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 식재위치등은 인ㆍ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천창, D/A, 발전기 연도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ㆍ허가 과정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배치상 일부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부경사로 경사도에 따른 보행자(유모차 등) 보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 부속동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구조물 등), 문주 디자인, 조경디자인, CI 및 BI위치 및 내용, 옹벽의 높이와 디자인 및 난간의 형태, 시설물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형상 및 구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외관 디자인 및 색채,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 시공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 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방,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동 주변 및 필로티등에 설치되며(필로티하부에 우선 적용)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등) 및 일부공용부에는 입주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후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동에 소음 및 진공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배치, 일조량, 그늘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음)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입주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급속 충전시스템 확대시 전기차 충전시스템 전체 숫자는 축소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101동,105동,106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일부 구간,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옥상층에는 아파트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 및 규격/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입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부지는 분양면적에서 제외되며, 이전요청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등의 침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우수저류조실, 정화조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1,085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1,088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및 방해행위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 바랍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둥크기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 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층수와 영역, 주거동 연결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10개소, 콘센트형 80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5개소입니다.
	근린생활 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옥외광고물 사인의 부착위치 및 타입,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 및 출입구는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설치 공간의 위치 및 크기는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는 실외기로 인한 소음, 진동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시 세대내에 침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비내력 조적 벽체는 실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RC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과 현관창고, 미확장발코니 및 실외기실, 피난대피소 등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 시공관리를 위하여 일부세대간 벽체에 공사용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부위는 준공전 차음 및 내화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로 마감됩니다.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고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등 유사시에는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1층 및 필로티 상부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제외)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고는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으며, 벽체 모서리는 직각이 아닌 경사면으로 면취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대피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사이즈와 색상,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조기 설치시 일부타입은 창호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건조기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1의 외부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해당 창호로는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이 불가하며, 해당 창호로 이삿짐 운반시 창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옥외공간	•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 단지조경(녹지, 조경시설, 수경시설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디자인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ㆍ후면 녹지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제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치된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및 포장공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련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준공 이후 입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단지내 건축물, 시설물, 조경식제 등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입주민 관리부재로

		인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 본 계약 체결이후에도 주변 건물 또는 아파트단지 등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타일은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되며, 접착부위와 접착부위가 아닌곳을 두드렸을 때 소리의 차이가 나게되며 이는 하자 및 보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정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 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할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 조절기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전용 인터넷회선 설치 비용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홈IoT서비스(스마트 하늘채 IoK서비스)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36개월이 지난 날부터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음성인식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와 스마트 가전기기를 별도 구매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음성인식 스피커는 제품 사양 및 모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 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도어락은 사용자 핸드폰 연동 디지털도어락 제품이며, 일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2층, 최상층 세대의 방범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중 한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등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승강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TV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에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이 설치된 벽에 전기/통신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파손 행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홈IoT 홍보 서비스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욕실스피커폰, 스마트도어락, 도어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견본주택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미건립타입 84㎡B/114㎡/135㎡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84㎡C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135㎡ 타입 하부세대는 배수 소음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제7조제2항제9호)	태양광 발전 설비	적용	전체 조명설비 용량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비율 20%이상 설치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외기직접면한 외벽 단열재 경질우레탄폼 2종2호(130mm) .외기간접면한 외벽 단열재 경질우레탄폼 2종2호(90/130mm) .외기직접면한 창 미서기 - 22mm로이복층유리(소프트코팅) + 22mm로이복층유리(소프트코팅), 기밀성 1등급 입면분할 - (외부-상)22mm로이복층유리(아르곤충진) + (외부-하)27.76mm로이복층유리(아르곤충진) + 내창22mm로이복층유리(아르곤충진), 기밀성 1등급 .외기간접면한 창 26mm일반복층유리(아르곤충진) .외기직접면한 최상층 단열재 비드법보온판 2종1호(200mm) . 외기간접면한 최상층 단열재 비드법보온판 2종1호(140mm)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외기직접면한 최하층 바닥난방 단열재 비드법보온판 2종1호(130mm+40mm) .외기직접면한 최하층 바닥난방 단열재 비드법보온판 2종1호+PF보드(110mm+40mm)

			. 외기간접면한 최하층 바닥난방 단열재 비드법보온판 2종1호(115mm)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개별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계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등 급
내진능력	MMI등급 VII (0.20g)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소방감리
회사명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무소건일종합기술
감리금액	₩2,296,303,000	₩465,981,664	₩517,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12900호	₩194,001,22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융통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공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IX.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 차입형 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사 “교동2공원개발(주)”의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사(신탁회사) “한국자산신탁(주)” 및 책임준공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하우스비전(주)”간에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 하여야 합니다.

■ 아래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여타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① 본 사업은 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사 “교동2공원개발(주)”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수탁사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분양계약 목적물은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교동2공원개발(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하우스비전(주)”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시행위탁사 “교동2공원개발(주)”에게 있습니다.

③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분양 또는 매각에 따른 대금은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용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대상 재산에 대한 오시공·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하우스비전(주)” 이 부담하고, “분양계약자”는 “한국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분양계약자”는 이를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분양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입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한국자산신탁(주)”과 “교동2공원개발(주)”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의 분양계약 상 매도자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교동2공원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한국자산신탁(주)“의 매수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교동2공원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등), 집단대출 미승인,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책임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⑦ 분양대금은 공사비, 사업비, PF대출금상환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⑧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⑨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교동2공원개발(주)“이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교동2공원개발(주)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 등기
- 2021년 9월 0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
- 2021년 9월 13일 (착공신고 필증)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한국자산신탁(주)	교동2공원개발(주)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하우스비전(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111번길8, 103호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별양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6, 3층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41111-0064647	110111-0036502	134511-0290508

▣ **견본주택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

▣ **홈페이지주소 : http:// 교동하늘채.com**

▣ 분양문의 : ☎ 033-653-890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하자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모델하우스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

